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12. 15.  
제245회 정례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24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1. 30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초일류 산업기술 정보교류와 기업비지니스를 위해 2007년 개최하는 「오송국제Bio하이테크 박람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 박람회 이후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와 홍보관 등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재산의 취득 :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 재산규모
  - 토지매입 : 33,000㎡(9,982평) 5,000백만원
  - 건물신축 : 3,300㎡( 998평)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11 ~ 2007. 9
- 사 업 비 : 9,500백만원(도비)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변경계획안은 우리 도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 일환으로 세계적인 융합기술(BINT) 클러스트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컨벤션시설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는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 생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 총 14개용지가 있는데 이중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부지 1만평을 취득하여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건평 1천평규모의 최신식 컨벤션 시설을 건립하여 전시실과 회의실, 기타 공유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0억원(평당 50만원)과 건물건립비 45억원(평당 450만원)을 합쳐 약 95억원정도임.
-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바이오 박람회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한편, 국제수준의 전시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서 각종 바이오관련 전시물을 유효적절하게 전시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BT산업의 핵심지역이며 교통요충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의 장점을 감안할 때 활발한 국제행사 개최도 예상됨.
- 따라서 바이오토피아 중복이미지 강화와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선도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등 미래산업의 투자로서 바람직하며 타당하다고 여겨짐.
- 다만, 현재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실태내지 앞으로 투자계획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와의 사전 협의내용, 그리고 사업비 95억원에 대한 재정조달 계획, 향후 컨벤션 시설 유지관리방안과 예상관리비용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가.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지원시설용지에 설치할 지원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박람회 부지의 규모 등을 확정하여 통보한 결과,
- 나. 그리고 박람회 행사용 부지로 요청한 1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박람회 행사 후 동 시설물의 활용방안과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행정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69

제출연월일 : 2005년 11월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초일류 산업기술 정보교류와 기업비즈니스를 위해 2007년 개최하는 「오송국제Bio하이테크 박람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 박람회 이후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전시와 홍보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

- 위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 재산규모
  - 토지매입 : 33,000㎡(9,982평) 5,000백만원
  - 건물신축 : 3,300㎡( 998평)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11 ~ 2007. 9
- 사업비 : 9,500백만원(도비)

###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출자취득	출자처분	비 고
계	9,500,000	-	-	-	
○ 오송전시컨벤션 센터 신축	9,500,000				

###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무상양수·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li> <li>2 ~ 5호 생략</li> </ol>